

##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기준 및 투자관리전문기관 관리규정

제정 2005. 6.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6호  
개정 2008. 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8호  
개정 2009. 5. 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18호  
개정 2011.12.2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34호  
개정 2014.10.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58호

### 제1장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 제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펀드”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결성된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2. 주요주주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8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본인 <개정 2008.8.25>

- 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 다. 자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해당 창업투자회사 등의 임원의 임면 등을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 제2장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기관 기준

**제3조(기관의 주요 목적)** 기관 설립의 주요목적, 기능, 조직이 모태조합 운용·관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운용전문인력의 확보)** ①투자관리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다음의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모태조합의 자산이 3,000억원 이하인 경우 : 5명 이상
  2. 모태조합 자산이 매 1,000억원 증가할 때마다 운용전문인력을 1명 이상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
- ②운용전문인력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의 투자심사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개정 2008.8.25>
  2.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개정 2008.8.25>
  3.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5. 기타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기관 또는 부서

**제5조(시설 기준)** ①투자관리기관은 모태조합의 출자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사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②투자관리기관은 모태조합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내부의사결정 기준)** 투자관리기관은 모태조합을 운용·관리에 필요한 조직체계와 내부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7조(현금보유 기준)** ①투자관리기관은 법적 성격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 자본금 이외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경비 3개월분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투자관리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즉시 모태조합에 1억원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 제3장 투자관리전문기관의 관리운영

**제8조 삭제** <2014.10.24>

**제9조(임·직원의 행위준칙)**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소관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4.10.24>
4.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든 본인의 계산으로 업무상 관련된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
5. 임·직원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윤리규정의 제정)** 전문기관은 윤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윤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직원의 행위준칙 내용
2. 임·직원이 행위준칙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절차

**제11조(내부통제기준)** ①전문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모태조합의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모태조합의 자산운영에 대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스크 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 모태조합의 총허용위험한도 및 자펀드별 허용위험한도 등 각종 위험한도의 설정 및 변경
3. 모태조합 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
4. 자펀드 규약의 심사

**제12조(운용전문인력 변동 등 보고)** 전문기관은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전문기관은 모태조합 자산의 투명성,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출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기관의 대표이사로 하고, 위원은 모태조합 운용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 등을 출

자심의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출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펀드 운영기관의 선정, 투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결산서 제출)**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장부등 열람)**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회계장부 및 기록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임·직원이 윤리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해임의 요구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제4장 모태조합의 운용

**제17조(모태조합 관리·운용원칙)** ①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측정하며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모태조합 자산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관리·운용하고, 독립회계로 장부 등의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8조(모태조합의 운용계획 수립)** ①전문기관은 해당 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계획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모태조합 운용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계획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변경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태조합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출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모태조합운용협의회를 둔다.

⑤제4항의 모태조합운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9조(모태조합의 운용실적 제출)** ①전문기관은 전년도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에는 자펀드의 업무운용보고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업무운용보고서는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작성예에 따른다.

**제20조(모태조합 규약의 작성시 사전협의)** ①전문기관은 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모태조합 성과평가)** 전문기관은 매년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모태조합 운용내역 공시)** 전문기관은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태조합의 운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모태조합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대표이

사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자펀드 운용)** ①전문기관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자펀드를 운용 시 원활한 운용을 위해 운영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정책목적과 펀드특성을 감안하여 자펀드 운영에 관한 전문기관의 관리 및 책임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은행 선정)** ①모태조합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은행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모태조합 자산의 운용상황을 상시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의 도입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34호, 2011.12.23>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58호, 2014.10.24>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